전과규정 5-1-13

규정번호 5-1-13
제정일자 2006.6.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11차 개정
관리부서 학사지원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에 의한 교내 전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과 신청) ① 전과의 신청은 학칙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는 학년 및 학기 4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 1주전에 확정하여 학기 초에 전과를 허가한다.

② 전과 신청 자격은 각 학과의 기준을 토대로 학사지원팀에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③ 전과 절차

1. 전과희망자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전과지원서”를 작성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 전과희망자는 전출학과 교수 의견서를 받는다.
3. 전과희망자는 “전과지원서”에 전출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받는다.
4. 전과희망자는 “전과지원서”에 전출학과 교수 의견서, 성적증명서, 전과사유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접수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5.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접수된 전과지원서는 해당 전출예정학과로 발송된다.(개정 2017.02.27., 2018.08.27.)
6. 각 학과별로 전과희망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결과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7.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는 전과 합격자를 발표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제3조(전과의 심사) ① 전과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반영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재학기간 중 성적
2. 전출학과 교수 의견서
3. 전입학과 교수 면접
4. 기타 학과별 선발기준

제4조(전과제한) ①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 또는 주간학과에서 야간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삭제(2024.7.24.)>

③ 교원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 중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제한한다.(개정 2017.06.20.)

④ (삭제 2017.06.20.)

⑤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를 할 수 없다.

제5조 (이수학점) ① 기 취득 학점 중 교양과목은 전부 인정한다.

② 전공과목은 전입학과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않은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3.1.)

제6조 (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65> <생략>

<66>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②, 제3조①, 제5조②,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67>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36> <생략>

<37>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항, ③항 1호, 4호, 5호, 6호, 7호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하고, 제4조 ④항 중 “디자인계열”을 각각 “디자인학부”로, “예·체능계열”을 각각 “예술체육학부”로, “동일계열”을 각각 “동일학부”로 한다.

<38> - <49>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25> <생략>

<26> 전과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④항의 “디자인학부 및 예술체육학부”를 “예술·건강학부”로 한다.

<27>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전과규정에 따른 전과제도 운영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2항)